

항공안전관리연구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안전관리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항공안전관리 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연구소는 항공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및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된 교육훈련, 기술자문 및 도서를 발간하며, 항공기의 사고에 관련된 자료조사와, 사고원인 분석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항공안전 및 항공기 사고의 조사,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연구
2. 항공분야 전반에 걸친 사고예방 연구
3. 연구 보고서 및 전문도서의 간행 배포
4. 연구발표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5. 외부로부터 수탁된 연구 수행
6. 관련 기술자에 대한 교육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연구소는 항공안전부와 사고조사부 그리고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훈련부를 둘 수 있으며, 각 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연구소에는 항공안전업무, 항공기 사고 조사 및 분석 연구 업무, 교육훈련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6조 (총회) 총회는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총회의 의장은 소장으로 한다.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한다.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9명 이내로 하며,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운영위원회 및 임기)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 (운영위원회 업무)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, 본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10조 (소장 및 간사) 연구소에는 소장과 간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소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한다.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
제11조 (부장) 연구소는 항공안전부장과 사고조사부장, 교육훈련부장을 각각 1인씩 둔다.

각 부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항공안전과 사고 조사에 대한 분석 및 연구, 그리고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2조 (감사) 연구소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1명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13조 (연구원)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목적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한 자를 비상임 특별연구원으로, 연구소에 상주하는 국내·외 관계학자를 상임 및 객원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.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14조 (회원)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회원 : 한국항공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본인이 신청하는 자
2. 특별회원 : 본 연구소의 사업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나 찬조하는 단체

제 3 장 제 정

제15조 (재정)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교 연구보조금, 용역사업 수익금, 교육사업 수익금, 기타 기부 및 보조금으로 한다.

제16조 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7조 (예산 및 결산)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8조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9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